

장가산한간 〈이년율령〉의 출토위치와 편련*

– 서사과정의 복원을 겸하여 –

김 병 준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1. 서론

운몽수호지(雲夢睡虎地) 출토 진률(秦律)과 함께 장가산(張家山) 274호묘에서 발견된 <이년율령(二年律令)>은 이제 진한시대 역사 연구에서 빼뜨릴 수 없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이년율령>이 공개된 이후 다양한 방면에서 해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연구 성과가 나왔으며, 그 결과 진한시대 국가지배의 주요한 측면들이 밝혀졌다.¹⁾ 그만큼 중요한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구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21-A00015).

1) 국내의 대표적 성과로는 이성규, 「진한 형벌체계의 재검토 - 운몽진간과 <이년율령>의 司寇를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85, 2003; 임중혁, 「한초의 율령 제정과 선택제도」, 『중국고증세사연구』 25, 2011 ; 이명화, 「진한 여성 형벌의 감형과 노역」,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이므로, 자료 자체에 대한 사료적 검토가 필요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2001년에 처음으로 공개된 석독 내용은 발굴 이후 18년이라는 오랜 준비기간 만큼이나 여러 정리자들의 세밀한 관찰과 판단에 근거한 것이었지만(張家山二四七號漢墓竹簡整理小組 2001), 자료가 공개되자 많은 연구자들은 자료에 기초한 연구뿐만 아니라 자료 자체에 대한 분석에 강한 관심을 표명하였고, 그 과정에서 석독(釋讀)과 분장(分章), 편련(編聯)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일본 경도대학 인문과학연구소와(富谷至 編, 2006) 전수대학(專修大學)에서도(專修大學『二年律令』研究會 2003~2009) 각각 공동 역주작업을 통해 상세한 주석과 함께 자료에 대한 검토를 병행하였다. 그 뒤 정리소조는 5년 만에 다시 석독수정본을 발행하였으며(張家山二四七號漢墓竹簡整理小組 2006), 최근에는 무한대학(武漢大學) 간백연구중심(簡帛研究中心)이 주축이 되어 적외선 촬영 기술을 동원한 새로운 석독 결과를 『이년율령 여주언서(二年律令與奏讞書)』(彭浩·陳偉·工藤元男 主編 2007)의 형태로 출간하였다. 이로써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글자의 판독 부분은 대부분 해결된 듯 보인다. 또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조문 간의 배치 문제도 상당한 진전을 보았다(윤재석 2008).

지금까지 자료 검토의 기본 방향은 원칙적으로 텍스트 내부 비판에 기초해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526매에 달하는 전체 <이년율령>의 조문을 정합적으로 모순 없이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 왔고, 그 바탕 위에서 글자의 석독을 비롯해 분장, 편련 부분도 검토되었던 것이다. 틀리거나 애매한 자체는 앞뒤 문맥 속에서 교정되었고, 두 개 이상의 간이 편련되어 하나의 조문을 구성할 경우나, 각 조문을 다시 율명(律名)으로 귀속하는 경우도 텍스트의 합리적 해석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

『중국고중세사연구』 25, 2011; 김경호, 「진·한초 행서율의 내용과 지방통치」, 『사총』 73, 2011 등이 있다. 국외의 연구성과는 李力, 『張家山247號漢簡法律文獻研究及其述評(1985.1-2008.12)』, 東京外國語大學, 2009에 잘 정리되어 있다.

그런데 이와 함께 텍스트의 외적 비판에 주안점을 두어 근본적인 자료 검토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경향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텍스트가 기록된 서사 재료의 특성과 크기, 그리고 그것이 처음 출토되었을 당시의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간의 경우와 달리 이 점이 강조되었던 까닭은 <이년율령>의 석독본과 함께 일반 사진, 적외선 사진이 모두 공개되었을 뿐 아니라, 출토 당시 각 간(簡)의 위치가 그림(示意圖)과 표로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출토 시의도의 공개는 고고학적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그동안 간독 자료 보고서에서는 시도된 적이 없었던 새로운 방식으로서 간독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된다.

문제는 현재까지 어떤 시도도 <이년율령> 두루마리(卷軸) 전체의 본래 모습을 복원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두루마리 내에서의 층위, 간의 선후, 연접 상태가 개별 율(律)과 율문(律文), 그리고 편련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그 경우도 텍스트 내용에 의해 결정된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장치에 불과했다. 정리소조본과 적외선본을 제외하고 전체적인 복원은 거의 시도되지 않았다. 그 까닭은 일차적으로 간독이 산란된 출토상황에서 비롯한다. 아쉽게도 <이년율령> 죽간의 출토상황은 완전하지 못했다.²⁾ 같은 무덤에서 발견된 다른 간독들이 비교적 완전한 형태를 띠고 있었던 것에 반해, <이년율령>의 경우는 죽간을 묶고 있던 끈이 풀려진데다 두루마리의 아랫부분으로부터 강한 충격을 받아 두 부분으로 흐트러진 상태로 출토되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시의도 작성시 축척의 미표기, 그리고 간과 출토번호의 표기 착오 등 여러 가지 실수가

2) 「江陵張家山三座漢墓出土大批竹簡」, 『文物』 1985-1 “3개의 무덤 관곽은 대부분 썩어 있었고, 곽실 안은 일찍부터 물이 차 있다가 나중에 진흙이 쌓이게 되었다. 그 때문에 죽간의 보존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고 원래의 모습이 파괴되었다. …… 표층의 죽간은 대부분 이미 부러졌지만, 아래쪽의 죽간은 보존이 완전하다. 원래 죽간은 분권(分卷) 배치되었는데, 나중에 물이 들어와 죽간이 떠다니면서 산란된 것으로 추정된다.”

발견되면서(富谷至 編 2006: 7-8), 시의도를 통해서는 원래의 모습을 완전히 복원하기 힘들다는 견해가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자들은 아직도 편련과 분장의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간의 출토위치 문제를 항상 제기한다. 기본적으로는 먼저 개별 간 내용의 합리적 연결에서 문제를 찾아내고 그 방증으로서 출토위치의 문제를 제시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편이지만, 적지 않은 연구자들은 본래의 모습이 산란되었던 과정을 하나씩 추적하면 역으로 본래의 모습을 복원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출토위치 시의도를 정밀하게 읽어내면서 전체 두루마리의 분장과 편련을 시도하고 있다(王偉 2006, 張伯元 2005). 그러나 이들 역시 전체적 복원을 하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남아있다면서 지금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얼버무린다. 전체 두루마리의 구성과 순서에 대해서는 산란을 가져온 외부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복원이 힘들다고 하면서도, 개별 간의 편련과 순서에 대해서는 출토위치를 중시하여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전체적 정합성 여부를 접어두고 개별 간의 순서를 따진다는 것인데, 이는 중대한 논리적 오류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연구 경향에는 그 저변에 근본적인 전제가 깔려있다. 그것은 무덤 속에 부장된 <이년율령>이라는 두루마리가 하나의 완전한 텍스트라는 가정이다. 부장될 당시 <이년율령>이라는 전체 제목 아래, 28개의 율과 1개의 령이 일정한 순서에 따라 각각 율명과 율문의 형태로 정연하게 편련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완전한 텍스트가 무덤에 묻힌 이후 외부적 충격에 의해 산란되었기 때문에 현재 이를 복원하기 힘들 뿐이며, <이년율령>의 출토위치를 복원하여 그 순서를 알 수만 있다면, 이는 곧 완전한 텍스트로서의 <이년율령>의 모습과 일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전제는 다시 더 근본적인 자료의 성격과 결부된다. 즉 하나의

완전한 텍스트라는 가정은 곧 이 텍스트를 묘주가 생전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보았던 데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사실 아무도 <이년율령>이 전한초기에 제정되어 사용된 전체 율령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이년율령>보다 수십 년밖에 떨어지지 않은 운몽수호지 진률의 내용과 비교해 보아도, 진률의 상당수 율명과 율문이 <이년율령>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년율령>의 진관령(津關令) 이외에 다수의 령이 존재했음을 문헌사료를 통해 익히 알 수 있는 바이다. 무엇보다 현재 526매의 간, 약 260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율령을 진한제국의 모든 율령이라고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다시 말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 율령 중 일부가 발췌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가 247호묘에 묻혀있는 <이년율령>이 최소한의 완전성을 가진 하나의 텍스트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묘주가 실제로 사용한 문건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³⁾ 하급관리로서 실제 행정체계 속에 포함되어 있는 묘주가 직접 사용했던 문건이라면 비록 전체 내용이 기록되지는 않더라도 발췌된 내용은 완전하게 갖춰져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년율령>에 한하는 한, 하나의 완전한 텍스트라는 전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최종적 복원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 역으로 이를 반증하지만, 출토위치를 더 정밀히 살펴보면 하나의 완전한 텍스트라는 막연한 가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덤 속에 묻힌 <이년율령>이 과연 묘주가 생전에 직접 사용했던 문건 그대로인지에 대해서도 자연히 의문

3) 극히 일부 연구자만이 간이 잘못 배치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한다. 그러나 그 경우라고 하더라도 잘못 배치된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만약 잘못 배치된 것이라면 묘주가 생전에 읽고 사용했을 법률이 아무런 실용적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張伯元, 앞의 논문, p. 69. 기본적 전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좋은 사례에 해당된다.

을 던질 수밖에 없다. 사실 무덤 속에 묻힌 문자자료가 묘주의 생애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부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이 곧 생전에 사용했던 문서 그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 이는 다시 무덤 속에서 출토된 간독자료가 어떤 식으로 서사되고 묻혔는지, 즉 무덤 출토자료의 성격 규정과도 연관될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년율령>의 텍스트 외적 비판을 시도하고자 한다. 율령의 서사 내용을 중심으로 그 내적 논리를 탐구하는 작업이 아니라, 텍스트 외적 요소를 검토하여 텍스트의 사료적 가치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서사외적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죽간이라는 서사재료이고, 다른 하나는 그 죽간이 발견된 출토위치이다. 전자에는 서사재료에 기입되어 있는 글자, 기호 그리고 간 자체와 관련된 요소들이 속한다. 특히 각 요소들의 오류 가능성에 초점이 맞추어 질 터이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출토위치라는 요소를 통해 <이년율령> 편련의 본질적 오류를 집중적으로 조명할 것이다. 이러한 텍스트 비판은 최종적으로는 무덤에서 출토된 간독자료인 <이년율령>의 서사 과정을 전체적으로 복원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2. <이년율령> 각 간의 출토 위치와 편련 분석

본 장에서는 시의도에 표시된 각 간의 출토위치를 검토함으로써 <이년율령>의 두루마리가 본래 석독본이 보여주는 것과 같은 편련을 하고 있었는지, 다시 말하자면 조문 내용에 의해 정리된 편련과 동일한 배열을 보여주는지를 살펴보겠다. 이 작업을 위해 먼저 정리소조본에 제시된 <죽간정리 번호와 출토 번호 대조표(竹簡整理號與出土號對照表)>에 따라 각 간 정리번호와 출토위치 번호를 일치시킨 뒤 이를 시의도에 표

시하였다. 그리고 다시 이를 석독본의 율별로 나누고, 각 율별마다 별도의 색깔로 표시하여 두었다(그림 1). 율별 분장과 조문의 편련 기준과 관련해서는 전술하였듯이 이미 텍스트의 내적 정합성을 중심으로 대단히 많은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어 있고 2007년 『이년율령여주언서』(이하 적외선본으로 별칭)가 이를 종합하였으므로, 논의의 편의상 본고는 기본적으로 이 석독본을 중심으로 편련과 율별 분장을 진행하였다. 특히 두 개 이상의 간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율문의 분석이 중심이 된다(표 1). 2001년 정리소조본에서 정리한 율문과 2007년 적외선본 사이에는 간문의 결합 구성에 일정한 변동이 있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또 일부 논의에서는 자신의 견해에 맞추어 출토위치를 조정하기도 하지만, 본고는 정리소조본 시의도에 충실하여 분석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견해들의 결론은 자신이 주목하는 대상에는 잘 들어맞지만 그러한 출토 위치 조정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또 다른 간 사이의 불일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용할 경우 논의가 더욱 복잡해지기만 할 뿐이다.⁴⁾

4) 張伯元의 경우는 고률 127(F18), 129(F19)와 그 위쪽의 1(F14), 5(F16) 및 47(F15), 4(F17)을 130간(F32)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고률에 속한 간이 집중된다고 하지만, 그 자리에 표시되어 있는 336(F26), 80(F27)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張伯元, 앞의 논문, pp. 73-75. 또 王偉는 F군과 C군의 경계부분 중 C군의 원쪽 중심부분 중 419간과 427이 상하로 붙어있는 것과 그 오른쪽 편에 420-428간이 상하로 붙어있는 것을 주목하여, 이 부분에 아래쪽으로부터 右上 방향으로 힘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추정한다. 王偉, 앞의 논문, p. 366.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잘 맞는 듯싶지만, 각각의 위아래에 다시 붙어있는 여러 간들의 소속과 편련 문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그림 1> <01년율령> 출토위치 示意圖

<표 1> <이년율령> 두 개 이상의 간문으로 구성된 조문 사례

율명	간 번
賊律	[1-2번], 3번, [4-5번], [6-7-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34번], [35-36-37번], 38번, 39번, [40-41번], [42-43번], 44번, 45번, 46번, 47번, [48-49번], 50번, 51번, 52번, 53번, 54번(律名)
盜律	[55-56번], 57번,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 [63-64번], [65-66번], 67번, [68-69번], 70번, [71-72-73번], [74-75번], 76번, 77번, [78-79번], 80번, 81번(律名)
具律	82번, 83번, 84번, 85번, 86번, [87-88-89번], [90-91-92번], [93-94-95-96-97-98번], 99번, 100번, 101번, [102-104-105-106번], [121-107-108-109번], 110번, 111번, 112번, 113번, [114-115-116-117번], [118-119번], [120-122-123-124번], 125번(律名)
告律	126번, [127-128-129-130-131번], 132번, 133번, 134번, 135번, 136번(律名)
捕律	[137-138번], 139번, [140-141-142-143번], [144-145번], [146-147-148-149번], [150-151-152번], 153번, [154-155번], 156번(律名)
亡律	157번, 158번, 159번, 160번, 161번, [162-163번], [164-165번], 166번, 167번, [168-169번], [170-171번], 172번, 173번(律名)
收律	[174-175번], [176번-177번], 178번, 179번, 180번, 181번(律名)
雜律	182번, 183번, 184번, 185번, 186번, 187번, 188번, 189번, [190-191-192번], 193번, 194번, 196번(律名)
譏律	[197-198번], [199-200번], [201-202번], 203번, [204-205번], [206-207번], 208번, 209번(律名)
置吏律	210번, [211-212번], [213-214-215번], 216번, 217번, 218번, [219-220번], 221번, [222-223번], 224번(律名)
均輸律	225번, 226번, 227번(律名)
傳食律	228번, [229-230번], 231번, [232-233-234-235-236-237번], 238번(律名)
田律	239번, [240-241번], 242번, 243번, 244번, 245번, [246-247-248번], 249번, 250번, [251-252번], [253-254번], 255번, 256번, 257번(律名)
關市律	[258-259번], [260-261-262번], 263번(律名)
行書律	264번, [265-266-267번], 268번, [269-270번], 271번, 272번, [273-274-275번], 276번, 277번(律名)
復律	195번, 281번(律名)
賜律	[282-283-284번], [285-286번], 287번, 288번, 289번, [290-291-292-293번], [294-295번], 296번, 297번, [299-300-301-302번], 303번, 304번(律名)
戶律	[305-306번], 307번, 308번, 309번, [310-311-312-313번], [314-315-316번], 317번, 318번, 319번, 320번, 321번, 322번, [323-324번], [325-326-327번], [328-329-330번], [331-332-333-334-335-336번], [337-338-339번], 340번, [341-342-343번], 344번, 345번, 346번(律名)
效律	[347-348번], 349번, 350번, 351번, 352번, 353번(律名)
傳律	354번, 355번, 356번, 357번, 358번, [359-360-361-362번], [364-365번], 363번, 366번(律名)
置後律	[367-368번], [369-370-371번], 372번, 373번, 374번, 375번, 376번, 377번, [378-379-380번], [381-382-383번], 384번, 385번, [386-387번], [388-389번], 390번, 391번(律名)
爵律	392번, [393-394번], 395번(律名)
興律	[396-397번], 398번, 399번, 400번, 401번, [402-403-404번], 405번, 406번(律名)
恤律	278-279-280번, 407번, [408-409번], 410번, [411-412-413-414-415번], 416번, 417번(律名)
金布律	[418-419-420번], [421-422-423번], [424-425번], 426번, [427-428번], [429-430-431-432번], 433번, 434번, 435번, [436-437-438번], 439번(律名)
秩律	[440-441번], 442번, [443-444번], 445번, 446번, [447-448-449-450번], [451-452-453-454-455-456-457-458-459-460-461-462-463-464번], [465-466번], 467번, 468번, [469-470번], [471-472번], 473번(律名)
史律	474번, [475-476번], [477-478번], 479번, 480번, 481번, [482-483번], [484-485-103번], 486번, 487번(律名)
津闢令	[488-489-490-491번], 492번, 493번, [494-495번], [496-497번], 498번, [500-501-499번], [502-503번], [504-505번], [506-507-510-511번], [509-508번], 512번, [513-514-515번], [516-517번], 518번, 519번, 520번, 521번, [522-523-524번], 525번(律名)
新見竹簡殘片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X14

<표 2> 정리소조본과 적외선본의 간번 배열 차이

정리소조본		『이년율령여주언서』	
율명	간번	율명	간번
賊律	[44-45번] [46-47번]	賊律	44번, 45번 46번, 47번
具律	[102-103], [104-105-106번] [107-108-109번] 120번, [121-122-123-124번]	賊律	[102-104-105-106번] [121-107-108-109번] [120-122-123-124번]
雜律	195번	復律	復律로 이동
復律	[278-279-280번], 281번	復律	195번, 281번 [278-279-280번]은 條律이동
傳律	363번, [364-365번]	傳律	[364-365번], 363번 (※조문 순서 변경)
史律	[484-485번]	史律	[484-485-103번]
津關令	[479-480번] [498-499번], [500-501번] [506-507-508번], [509-510-511번]	津關令	479번, 480번 498번, [500-501-499번] [506-507-510-511번], [509-508번]

2.1. <이년율령>의 율별 분석

먼저 적률(賊律)의 율문을 보도록 하자. 시의도를 보면 적어도 7간부터 35간까지는 정리소조의 간 번호 순서대로 일렬로 정연하게 배열되어 있다. 이와는 달리 1간에서 8간까지 그리고 36간 이후에는 대단히 혼란스러운 배열을 보인다. 6-7-8간이 하나의 율문으로 결합되어 있지만, 6간과 7간 사이에 고률(告律)에 해당되는 간이 끼여있다. 또 35-36-37간이 결합되어 있지만, 각 간의 사이에는 도률(盜律) 및 흥률(興律) 등에 속하는 2~3개의 간이 끼어있다.⁵⁾

그런가 하면 정리소조본에서는 결합시켜 놓았던 것을 출토 위치가 멀다고 해서 별도의 간으로 분리한 경우도 확인된다. 즉 정리소조본은 44

5) 그밖에 42-43간이 결합되어 있지만, 이 42간은 가장 바깥 외층에 배치되어 있고 43간은 가장 중심부에 배치되어 있다. “敵父偏妻、父母男子同產之妻、泰父母之同產，及夫父母同產、夫之同產，若敵妻之父母，皆贖耐。其僕訟置之，罰金”42(F182) + “四兩。” 43(F83) 따라서 43간의 원래 위치는 F83이 아니라 F183이라고 봐야 한다. 田律 246간의 위치를 F83이라고 하고 있는 반면, F183은 어느 간에도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간과 45간을, 46간과 47간을 각각 하나의 율문으로 결합하였는데, 경도 대본과 적외선본은 두 간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모두 별 개의 간으로 처리하였다. 그렇지만 이렇게 변동이 가능했던 것은 45간과 47간의 내용이 끊어진 간이라서 내용상 직접적 연결시키기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단간(單簡)의 경우에는 해당 율명에 귀속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즉 38간, 51간, 52간은 뿔뿔이 흩어져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주변에 있는 간의 소속 율명과 맞추어 38간을 수률(收律), 51간, 52간을 흥율(興律)에 귀속시키는 연구도 있다(張伯元 2005: 71). 그러나 38간(F137)이 수률(收律)과 위아래 층으로 가깝게 위치해 있기는 해도 양 옆쪽에는 전률(錢律)에 속한 206(F138), 207(F136)이 배치되어 있다. 또 52간(F34)와 수률(收律)에 귀속된 406간(F33)이 연접되어 있지만, 406간 좌측과 51간(F36) 사이에는 효률(效律)에 귀속된 350간(F37)이 연접되어 있다. 즉 출토위치가 가깝다고 해서 율명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비교적 집중된다는 정도일 뿐이지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두 번째 도률(盜律)의 율문을 보자. 도률도 시의도를 보면 C군에 속하는 65간에서 76간까지는 아래쪽 두 번째 층으로 비교적 정연하게 배열되어 있다.⁶⁾ 반면 F군에 속하는 간에는 혼란스러운 배열이 보인다.

78간(C30)과 79간(C66)이 결합되어 있지만, 이 두 간은 매우 멀리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도률과도 떨어져 있다. 하지만 이 두 간의 내용은 모두 관청으로부터 기물을 빌리는 것과(假于縣道官) 관련한 규정으로서, 78간의 ‘자언(自言)’과 79간의 ‘부자언(不自言)’이 대구를 이루고 있으므로 내용상 양자의 결합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한편 77간(F20)은 단간(單簡)이지만 그 내용은 78-79간과 직결되어 있다. 즉 78간과 79간의

6) 73간(F160)은 F군에 속하지만 C군과 F군이 분리된 지점에 바깥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C군의 다른 간과 연접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내용에는 모두 ‘사자가률(私自假律)로 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사자가률(私自假律)’이 바로 77간의 ‘사자가(私自假’ 규정이기 때문이다.⁷⁾ 내용상 77-78-79간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인데, 배열상으로는 그 77간이 F군의 왼쪽 끝에 위치한다. 이 3간의 위치를 전체적으로 보면 왼쪽 바깥 끝, 가운데 3층, 그리고 오른쪽 부분 3층에 뿔뿔이 흩어져 위치해 있다.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하나의 연결된 율문이 이렇게 멀리 흩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세 간의 결합 여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동일한 내용을 적은 간문이지만 본래부터 얼마든지 멀리 배열되어 편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단간(單簡)의 경우는 비교적 집중되어 있지만, 80간(F27)은 다른 간과 멀리 떨어져 단독으로 배치되어 있다. 56간과 60간 사이, 57간과 62간 사이, 그리고 61간과 62간 사이 등에도 다른 율에 소속된 간이 끼어들어가 있다.

세 번째 구률(具律)의 율문을 보자. 구률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간이 집중되어 배열되어 있다. 다만 C군에 속해있는 82간부터 91간까지 제2층에 위치한 반면 93간부터 105간까지 그 아래쪽 3층에 위치하여 두 줄에 걸쳐 있다. C군의 아랫부분 즉 109-116간이 한 줄로 배열되어 있고, 또 C군의 오른쪽 부분으로 갈수록 총수가 적어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렇게 두 줄로 배열되어 있는 것은 93-105간까지 다른 구률의 간문과 별도의 둑음으로 다음 층에 편련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⁸⁾

7) 77간(F20) “□□以財物私自假貸人罰金二兩. 其錢金・布帛・粟米・馬牛也, 與盜同法.”

8) 李均明은 이 부분을 떼어내어 수률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李力·張建國·張伯元은 고률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 李均明, 「<二年律令>中應分出<囚律>條款」, 『鄭州大學學報』2002-3 ; 李力, 「關於<二年律令>簡93-98之歸屬問題的補充意見」, 『出土文物研究』6輯 ; 張建國, 「張家山漢簡<具律>121簡排序辨正 - 兼析相關各條律條文」, 『法學研究』2004-6 ; 張伯元, pp. 80-81.

다만 95-98 결합간의 경우, 96간이 왼쪽에 떨어져 있고 95-97-99-98간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즉 내용적으로 하나의 율문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96간의 위치를 비롯해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 한편 정리소조본에서 102-106간을 결합간으로 보았으나 적외선본에서는 팽호(彭浩)의 의견을 수용하여(彭浩 2004) 103간을 사률(史律)로 이동 배치하였다. 내용상으로도 연결되지만 출토위치가 사률의 485간과 연접해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로 작용했다.

네 번째 고률(告律)은 앞선 세 율과는 달리 전반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127-128-129-130-131 결합간의 경우 내용상으로는 명백히 하나의 율문에 속한다. 고불심(告不審) 및 유죄선자고(有罪先自告)의 경우에는 각각 ‘감기죄일등(減其罪一等)’하는 규정인데, 사죄(死罪) 이하 속내(贖耐)까지 그리고 다시 속사(贖死)에서 벌금일량(罰金一兩)까지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127-129간과 130-131간 사이는 연접되어 있지 않다.

단간(單簡)의 경우 132간은 F군의 맨 위쪽, 133간은 C군의 왼쪽, 134간은 C군의 오른쪽 끝, 135간은 F군의 아래쪽에 위치해 있다. 하나의 율명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 흩어진 배열 위치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산란이라고 볼 수 없다.

다섯 번째 포률(捕律)은 140-143 결합간 중 140간이 F군의 왼쪽 끝, 141간이 C군의 왼쪽 끝, 142간이 C군의 오른쪽 끝, 143간이 141간과 142간의 중간쯤에 위치해 있다. 150-151간으로 구성된 결합간은 150간이 C군의 맨 왼쪽, 151간이 C군의 맨 오른쪽에 위치해 있다.

여섯 번째 망률(亡律)은 162-163간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C군과 F군의 위쪽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⁹⁾ 그렇지만 170간과 171간으로 구성된 결합간의 경우 170간이 C군 중간에, 171간이 C군 오른쪽 끝에 위치하고

9) 王偉는 162-163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망률에서 분리해 내고 ‘어디로 귀속시켜야 할지 모르겠다’고 처리하였다. 王偉, 앞의 논문, p. 362.

있어 멀리 떨어져 있다.¹⁰⁾ 한편 단간(單簡)은 160간, 161간, 164간 등이 F군의 위쪽 가장 바깥층에 위치하고 있는가 하면, 165간부터 171간까지 순서 없이 개별적으로 드문드문 위치해 있다.

일곱 번째 수률(收律)은 다른 율과는 달리 매우 정연하게 배열되어 있다. 즉 174-175 결합간도 연접해 있고, 176-177 결합간도 바로 연접해 있다. 174간부터 177간까지 일렬로 배열되어 있고 178간부터 180간까지 일렬로 배열되어 있으며, 그 사이에 구률(具律) 혹은 잡률(雜律) 간이 1~2개 끼어들어 있을 뿐이다.

여덟 번째 잡률(雜律)은 194간, 196간이 C군 중간층 부분에 별도로 위치해 있고, 185간, 186간이 F군의 왼쪽 끝에 위치해 있으며, 182간, 183간, 184간, 187간이 F군 아래쪽, 그리고 나머지가 C군의 오른쪽 아래에 위치해 있다. 전체적으로 네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결합간은 없지만, 단간(單簡) 사이에는 다른 간이 끼어들어가 있다.

아홉 번째 전률(錢律)은 소속 율문이 일렬로 잘 배열되어 있는 사례이다. C군 아래쪽에 204-205간, 197-198-199-200-201-203간, 그리고 C군과 F군 사이에 1~2개의 다른 간이 끼어 있고, 다시 F군 아래쪽에 208-202-206, 그리고 역시 1~2개의 다른 간이 끼어 있고, 마지막으로 207-209간으로 이어져 있다. 사실 이렇게 잘 배열된 사례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년율령> 전체 출토위치의 의미를 고찰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이년율령>의 많은 부분에 배열 위치가 흩어져 있다는 문제를 외부의 물리적 요인으로 말미암은 산란으로만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음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열 번째 치리률(置吏律)은 210간부터 218간까지는 C군의 위쪽에 비교적 나란히 배열되어 있고, 219간부터 223간까지는 C군의 아래쪽에 드문

10) 역시 王偉는 출토위치가 두 간의 위치가 너무 멀고, 특히 171간이 다른 간과 멀기 때문에 171간을 떼어낸 뒤 ‘어디로 귀속시켜야 할지 모르겠다’고 처리하였다. 王偉, 앞의 논문, p. 362.

드문 배열되어 있다. 한편 213-214-215 및 219-220 결합간은 나란히 연접해 있는 반면, 211-212 결합간의 경우는 중간에 다른 간이 끼여 있다. 단간(單簡)인 221간, 222간, 223간은 다른 간과 별도로 C군 아래쪽에 떨어져 위치해 있다.¹¹⁾

열한 번째 균수률(均輸律)은 단지 세 개의 단간(單簡)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세 개의 단간(225, 226, 227)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있다.

열두 번째 전식률(傳食律)은 232-233간을 제외하고는 같은 줄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단간도 연접해 있지 않고 대부분 F군 안에서 흩어져 있다. 한편 229-230 결합간과 232-233 결합간은 연접해 있으나, 229-230 결합간의 경우는 사이에 다른 간이 끼어들어가 있고 234-237 결합간의 경우는 맨 오른쪽에 237간, 그 다음에 제목간인 238간, 그리고 235-234간, 다른 간, 236간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열세 번째 전률(田律)은 전체적으로 두루마리의 중심부에 몰려 있지만, 245간만이 C군의 중간쯤에 떨어져 있다. 하지만 246-247-248 결합간은 비록 집중되어 있으나 연접되어 있지 않다. 251-252 결합간이나 253-254 결합간도 모두 사이에 다른 간들이 끼어있다.

열네 번째 관시률(關市律)은 다섯 개의 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F군에 262-261간과 260-258-259간이 정연히 일렬로 배열되어 있다. 258-259 결합간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연접해 있으나 260-261-262 결합간은 260간이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그 진행 순서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정연한 배열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반면, 일부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치해 있다. 간이 산란된 상태가 아니므로 처음부터 간의 배열순서가 달랐다고 해야 할 것이다.

11) 王偉는 221-223간이 하나의 범주에 속하지만 치리률의 다른 간과는 다르다고 하면서 떼어내야 할 것 같다고 하였다. 王偉, 앞의 논문, p. 363.

열다섯 번째, 행서률(行書律)은 272간부터 275간까지 C군 제8층에 일렬로 배열되어 있는 부분과 276간과 277간의 F군 부분, 그리고 264간부터 271간까지 C군 중심부에 몰려있는 부분으로 크게 나뉘어 있다. 275간 부분과 276간 부분이 연결되어 있었을 수 있으므로,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65-266-267 결합간은 연접해 있고, 273-274-275 결합간도 연접해 있다. 그러나 269-270 결합간의 경우, 269간은 F군 왼쪽 아래 바깥층에 위치하고 270간은 C군의 중심부 가까이에 위치해 있어서 양자가 외부요인에 의해 산란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즉 내용상 269간과 270간을 하나의 조문으로 보면, 두 간은 처음부터 별도의 위치에 편련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¹²⁾

열여섯 번째, 복률(復律)은 두 개의 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95간이 있는 곳과 제목간인 281간이 위치해 있는 곳은 크게 떨어져 있다.

열일곱 번째, 사률(賜律)은 282간부터 285간까지의 부분이 C군의 중심부, 286부터 290간까지가 F군의 중심부에 위치한 반면, 그 밖의 간들은 중심부에서 조금 바깥쪽 층에 일렬로 배열되어 있다.¹³⁾ 282-283-284 결합간은 연접되어 있고, 291-292-293 결합간은 291-292와 293간 사이에 다른 간 1개가 끼여 들어가 있다.¹⁴⁾

12) 김경호는 악록진간 0792간 ‘後有盈十日, 輒加一甲’을 근거로 270간의 ‘盈一日罰金二兩’을 269간의 추가형별로 이해하고 269간과 270간의 결합을 긍정하였다(김경호, 앞의 논문). 한편 王偉는 출토위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270간을 석출해야 한다고 한다. 王偉, 앞의 논문, pp. 366-367. 최근 若江賢三・畠野吉則도 이 부분에 착목하였으며 269-270의 결합 대신 269-336의 결합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336간의 위치가 F군의 위쪽 바깥층에 해당하는 F26이므로 배열위치가 떨어져 있음을 마찬가지이다. 若江賢三・畠野吉則, 「張家山漢墓竹簡『二年律令』の接續と配列について—三七四・三八一及び二六九簡について」, 『人文學論叢』 12(愛媛大學人文學會), 2010.

13) 王偉는 이 중 282-290까지 내용이 옷과 관을 사여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술과 음식을 사여하는 부분이므로, 282-290을 떼어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한다. 王偉, 앞의 논문, p. 365.

열여덟 번째, 호률(戶律)은 310-311-312-313 결합간의 경우 310간이 F군 위쪽 중심 가까운 곳, 311간이 F군 왼쪽 끝, 312간은 C군 중심부 오른쪽에, 313간은 C군 중심부 왼쪽에 위치한다. 그 내용은 관내후(關內侯)에서 사구(司寇)·은관(隱官)까지 수전의 양을 규정한 것인므로 하나의 율문을 구성하는 것은 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간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있다. 반면 314-315-316 결합간의 경우는 역시 철후(徹侯)에서 사구·은관에 이르기까지 주택의 규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율문을 구성하는 것임에 틀림없는데, 314간과 315간 사이에 342-343 결합간이 끼어들어 있기는 해도 모여 있는 편이다. 331-332-333-334-335-336 결합간의 경우에는 336간이 F군 위쪽 부분에 따로 떨어져 있고 나머지는 C군 중심부에 몰려 있는 편이지만 대부분 연접해 있지 않다.

열아홉 번째, 효률(效律)은 제목간을 포함하여 7개의 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47간과 351간이 F군 아래쪽 우측편에, 나머지는 F군 위쪽 왼쪽 편에 위치한다. 347-348 결합간은 각각 별개의 곳에 위치해 있다.

스무 번째, 부률(傅律)은 C군과 F군으로 나뉘어 있지만 대체적으로 같은 층위에 나란히 배열되어 있다. C군과 F군의 경계에 해당되는 362간과 358간 사이, 그리고 358간과 359간 사이에 다른 간이 끼어 있는 정도이다. 364-365 결합간은 연접해 있으나, 359-360-361-362 결합간의 경우는 359-360간과 361-362간이 떨어져 있으며¹⁵⁾ 순서도 361-362간이 앞쪽에 359-360간이 뒤쪽에 해당된다. 단간의 순서도 석문본과는 크게 다르다.

스물한 번째, 치후률(置後律)은 대부분 C군에 위치하고 있고, 두 개의

14) 王偉는 292간 마지막에 약 6자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결합간이 아닌 두 개의 조문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한다. 王偉, 앞의 논문, p. 365.

15) 王偉도 출토위치가 비교적 멀기 때문에 두 개의 조문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하고, 적외선본도 이를 받아들여 직접 연결되지는 않는 것 같다고 하였다. 양자가 모두 지적하듯이 360간의 마지막 부분에 5~6자 정도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다음 간으로 연결되지 않고 이 간에서 문장이 끝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간(372,388)만이 F군에 단독으로 위치해 있다.¹⁶⁾ C군의 간들도 중심부에 몰려있는 부류와 위쪽 가운데 층위에 배열되어 있는 부류로 나뉘어 있다. 결합간의 경우 382-383간, 386-387간은 연접되어 있으나 386-387간은 순서가 뒤집혀 있다. 367-368간의 경우 367간은 C군의 오른쪽 끝 가장 바깥층에 위치한 반면 368간은 C군의 맨 왼쪽 중간층위에 위치해 있다. 379-380 결합간도 멀리 떨어져 있다. 360-370-371 결합간은 370간이 떨어져 있고 순서도 바뀌어 있다. 단간의 순서가 크게 뒤바뀌어 있는 것은 물론이다.

스물두 번째, 작률(爵律)은 네 개의 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C군의 중간 층위에 일렬로 배열되어 있다. 그런데 이 중 유독 392간만이 왼쪽으로 떨어져 있고 층위도 한 줄 바깥쪽으로 보인다. 외부 요인에 의한 산란을 상정하기는 곤란한 위치이다. 그렇지만 392간과 393간은 동일한 범주의 내용을 담고 있다.¹⁷⁾ 편편 당시 392간을 별도로 배치했을 가능성도 크다.

스물세 번째, 흥률(興律)은 대부분 F군의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목간만 F군의 위쪽 편에 단독으로 위치해 있다. 그렇지만 간이 각각 흩어져 있는 편이다. 도률, 수률, 전률(錢律), 부률, 호률, 사률, 관시률, 전률(田律) 중 F군에 위치한 부분이 비교적 정연한 것과 대비된다. 결합간인 396-397도 멀리 떨어져 있다.

스물네 번째, 요률(飭律)은 대략 C군 위쪽의 중간 층위에 일렬로 배치되어 있는 모습이지만, 278간은 C군의 아래쪽에, 그리고 279간과 280간은 F군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407간은 F군의 왼쪽 바깥부분 층위에 위치하는 등 일부 산란된 위치가 보인다. 그런데 본래 복률에 귀속되었다가

16) 王偉는 이 때문에 ‘어디로 귀속시켜야 할지 모르겠다’고 처리하였다. 王偉, 앞의 논문, p. 364.

17) 392간(C242) “當拜爵及賜, 未拜而有罪耐者, 勿拜賜.” + 393간(C240) “諸當賜受爵, 而不當 爵者, 級予萬錢.”

다시 요률로 바뀌어 귀속된 결합간이 바로 이 278-279-280간이다. 즉 하나의 율문을 구성하는 간이 전혀 별개의 장소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다. 역시 외부적 요인에 의해 산란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408-409 결합간, 그리고 411-412-413-414-415 결합간 모두 간이 연접해 있지 않다.

스물다섯 번째, 금포률(金布律)은 C군과 F군의 중심부에 대부분 몰려 있는데, 423간만 F군 위쪽 가장 바깥층에 위치해 있다. 결합간 중 429-430-431-432간은 432간이 F군의 중간층 맨 왼쪽에 위치하는 반면 다른 간은 C군에 위치해 있는 등 출토위치가 뒤바뀌어 있다. 특히 421-422-423 결합간은 421이 C군 중심부 오른쪽, 422간이 C군 중심부 왼쪽, 423간이 F군 위쪽 가장 바깥층에 각각 위치해 외적 요인으로 산란되기 힘든 배치를 보이고 있다.

스물여섯 번째, 질률(秩律)은 C군과 F군에 걸쳐 있지만 대략적으로 비슷한 층위에 일렬로 배열되어 있는 모습이다. 다만 447간, 470간이 C군 오른쪽 끝에 별도로 위치해 있다. 사실 질률은 내용상 편련에 큰 문제가 없는 편이며, 특히 451간부터 464간까지의 결합간은 일렬로 연접해 있다. 그러나 443-444 결합간의 경우 443간은 F군의 아래쪽, 444간은 F군의 위쪽에 위치하고, 469-470 결합간은 469간이 F군의 왼쪽 끝에 470간은 C군의 오른쪽 끝에 위치하는 등 정반대 장소에 위치해 있다. 결국 일부는 일렬로 정연하게, 또 다른 일부는 뿔뿔이 흩어져 배열되었다는 것이다.

스물일곱 번째, 사률(史律) 역시 전체적으로 C군과 F군에 걸쳐 있는데 일부 끊어진 곳도 있지만 C군은 비교적 일렬로 배열되어 있고 순서도 일정하다. 다만 486간은 단간이지만 그 내용이 경요(更徭)과 관련되어 있어 484-485-103간과 동일 범주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485간과 486간 사이에는 여러 간이 끼어 있다.

스물여덟 번째, 진관령(津關令)은 C군과 F군에 걸쳐있고 C군의 간은

반원형을 이루고 있다. 비교적 정연하게 배열된 편이지만, C군의 간은 두 층에 걸쳐 배열되어 있는 반면 F군은 한 층에 배열되어 있다. 500-501-499 결합간은 500이 C군 오른쪽 바깥부분에, 499간이 C군 거의 왼쪽 끝 중심 부분에 위치하고 501간은 그 중간에 위치해 있어서 각각 뿔뿔이 흩어져 있다.¹⁸⁾

2.2. 출토위치와 편련의 불일치

간문의 편련은 다음과 같이 네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두 개 이상의 간이 하나의 조문을 구성하는 간의 결합 문제, 둘째 각 조문이 어떤 율에 귀속되는가라는 편장(篇章)의 문제, 셋째 율 내에서 각각의 조문이 어떤 순서로 배열되는가라는 문제, 넷째 <이년율령> 전체에서의 각각의 율이 어떤 순서로 배열되는가라는 문제가 그것이다. 이하 순서에 따라 살펴보도록 하자.

2.2.1. 두 개 이상의 간이 결합된 경우

그 수는 전체 526매 간문 중 약 반에 해당되는 264간, 조문 수로는 98 개가 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이들 중 일부는 바로 연접해 있는 것들로서 내용상으로나 출토위치상으로나 하나의 조문을 구성하고 있다는 데에

18) 진관령은 간문에 번호가 기입되어 있고 또 간문의 귀속도 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여러 연구자들이 편련 방식을 둘러싸고 논의해 왔다. 대표적인 연구가 王偉의 연구인데, 이 중 주의할 만한 논점은 다음과 같다. 즉 그는 진관령의 첫 번째 간이 488간이고 그 위치가 F122이므로 진관령의 간은 전체적으로 F군 → C군 위쪽 → C군 아래쪽 → F군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슈16이 F군에 속하고 슈21이 C군 아래쪽에 속하므로 C군 위쪽에 위치하는 502-503간이 슈16과 슈21 사이에 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록 간의 머리 부분에 ‘九’라고 쓰여 있지만 이는 ‘十九’에서 ‘十’이 잘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출토위치에 의해 간의 순서를 조정하고 심지어 간의 석문까지 교정하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견이 없다. 그렇지만 연접해 있지 않는 간 역시 상당수를 차지한다. 연접해 있지 않은 간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간 사이에 동일 율에 속한 다른 간이 끼어들어 있는 경우다. 동일한 율에 속하는 조문들이 서로 뒤섞여 있는 상태이다. 둘째, 간 사이에 다른 율에 속한 간이 끼어들어 있는 경우다.셋째, 하나의 조문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간이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간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경우는 일견 두루마리가 외부로부터 충격을 받아 흐트러지면서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C군 아랫부분의 배열 상황을 보면 동일한 율에 속한 간들이 같은 층위에 일렬로 정연히 배열되어 있으며, 이만큼은 아니지만 C군과 F군에도 동일 율에 소속된 간이 흐트러짐 없이 비슷한 층위에 한 줄 혹은 두 줄로 배열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두루마리 중 어느 줄은 흐트러짐 없이 배열되어 있는데, 다른 줄에서는 간 사이에 다른 간들이 끼어들어갔다면 그것은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한 줄에만 충격이 전달되었다는 셈인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하물며 세 번째와 같이 간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라면 도저히 외부적 충격으로 흩어졌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어느 간은 두루마리의 중심부에 놓여있고 다른 간은 두루마리의 바깥쪽 외층에 위치해 있는 경우라든지, 어느 간은 C군의 오른쪽 끝, 다른 하나는 F군의 왼쪽 끝에 위치하는 경우도 많다. 특정 간을 일부러 뽑아서 다른 곳으로 옮기기 전에는 상상하기 힘들다.

요컨대 두 개 이상의 간이 결합되어 하나의 조문을 이루는 경우 적지 않은 수가 상호간 연접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러한 격절 현상을 나중에 두루마리에 가해진 물리적 힘에 의해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2.2.2. 각 조문이 귀속되는 율명의 문제

이 문제에는 2.2.1에서 언급한 결합간은 물론 하나의 간으로 조문을 구성하는 단간의 경우도 포함된다. 즉 하나의 조문으로 성립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것들이 항상 일렬로 배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도 역시 첫째 중간에 다른 율에 속한 조문이 1~2개 끼어들어 있는 경우와, 둘째 매우 먼 곳에 떨어져 있는 경우가 동시에 존재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정리소조본과 적외선본이 귀속시킨 율명 대신 출토위치 주변에 비교적 많이 집중되어 있는 율로 바꾸어 귀속시키는 연구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균수률의 사례에서도 잘 드러나듯 단지 세 개의 단간이 서로 멀리 뿔뿔이 흩어져 있는 등 동일한 율명에 속하는 조문이 나란히 배열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율문이 나란히 배열되지 않는다는 것과 함께 주목할 만한 점은 율문과 제목이 반드시 연접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적률 소속 간이 바깥 1층에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데 제목간(54, C18)만이 유독 2층에 위치해 있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도률(81, F21), 포률(156, C264), 수률(181, F143), 잡률(196, C88), 균수률(226, F25), 복률(281, C265), 효률(353, F10), 흥률(406, F33)의 제목간은 다른 간들과 연접해 있지 않다. 그 중에서도 포률, 잡률, 균수률, 복률의 제목간은 완전히 별개의 곳에 위치한다. 비교적 다른 율문과 가까이 있는 경우도 구률(125, C312)처럼 다른 조문이 연속적으로 배열되는 중간에 제목간이 위치하기도 하고, 수률(181, F143)처럼 율문 사이에 다른 간이 끼어들어 있기도 하다.

2.2.3. 율 내에서의 각 조문 순서

율의 조문이 일렬로 배열되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다른 조문과 섞여있거나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조문의 순서를 정할 수 없을 것임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전자의 경

우도 석문본의 순서와는 크게 다른 배열을 보인다. 즉 석문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묶어놓기 위해 출토위치와 상관없이 정리번호를 부여하곤 하였다. 가령 적률의 경우 시의도를 보면 24간은 31간과 32간 중간에 배치되어 있고, 23간이나 25간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 출토 위치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23간과 25간 사이의 정리번호를 부여한 까닭은, 24간의 내용이 ‘투상인(鬪傷人)’하여 결국 죽게 된 이른바 ‘보고(保辜)’ 규정이므로 ‘적살인(賊殺人)’의 규정인 23간과 ‘적상인(賊傷人)’의 규정인 25간 사이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다. ‘투구변인(鬪毆變人)’ 규정인 31간 뒤에 두는 편이 출토위치는 물론 내용상으로도 적합하다고 생각한다.¹⁹⁾ 한편 출토위치를 보면 간의 진행방향이 뒤집힌 경우가 많다. 가령 포를 144-145 결합간이나 147-148-149 결합간 모두 다른 간과는 달리 우측에서 좌측으로 간이 진행하고 있다.²⁰⁾ 요컨대 율 내에서 조문의 순서는 그 내용과는 상관없이 매우 혼란스럽게 배열되어 있다는 것이다.

2.2.4. <이년율령> 전체에서의 각 율 순서

왕위(王偉)는 상술한 세 경우와 달리 율의 순서는 전적으로 출토위치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王偉 2006). 먼저 ‘이년율령’이라는 제목이 배면에 적혀 있는 1간을 출발점으로 삼기 때문에 1간의 정면에 기록되어 있는 적률을 전체 이년율령의 첫 번째 율명으로 삼을 수 있으며, 그 다음은 간독이 말려있는 순서에 따라 율명을 배열하였으므로

19) 이와는 반대로 출토위치를 고려하면 올바른 조문의 순서를 찾아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부률의 경우를 보면, 정리소조본이 363-364-365간의 순서로 배열한 것에 대해 王偉는 출토위치를 고려해 364-365간 뒤에 363간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적외선본도 『한서』 고제기 기록의 순서에 맞추어 이 입장에 동조했다.

20) 적률의 경우 11간 이후 좌측에서 우측으로 전개되나, 4-5간은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었다.